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글 쓰는 전문 직업인, 조선의 「사관」 - 사관의 언론활동

/ 위원회 뉴스

몽골 · 러시아 언론평의회 등 시찰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신설

2015
08
Vol. 182



응시



풍란 작은 화분에
 느림의 바리스타 민달팽이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내 다정한 이웃이기도 한
 녀석을 보면서 한 템포 늦춰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녀석의 느린 생각이 나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써 허공에 내민 풍란의 새 뿌리를 죄다 먹어치운 저 녀석을
 오늘 아침 결국 잡아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달팽이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풍란의 뿌리를 갇아 먹은 건
 극한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못된 인간과 동일시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억울할 것 같다고
 그동안의 정분을 생각해
 따로 먹고 살 작은 상추 화분 집을 하나 마련해주면 어떨겠냐고
 걱정하고 변호까지 했습니다만
 내 결심이 확고했던 것은 풍란의 억울한 표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뿌리만큼은 손대지 말아야 하는
 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절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뿌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일 같지만 세상사는 일이 다 그렇듯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엄청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병은

- 1989 시대문학 신인문학상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문화예술추진위원회 위원장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과정 전담 강사
- 한국예총여수지회 지회장
-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교사
- 전남문학상, 지역예술문화상, 전라남도 문화상, 아름다운 스승상 수상
- 시집 <바람과 함께 풀잎이> <식물성 아침을 맞는다>
<강 건너 풀의 잠> <바람 굶는 법> <잠깐 조는 사이> <휴> 외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
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린
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
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
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
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
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
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
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witter.com/pac_news

홈페이지 www.pac.or.kr

www.facebook.com/pacnews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Contents

2015 August Vol.182

- 04 역사 속 언론 글 쓰는 전문 직업인, 조선의 「사관」
- 사관의 언론활동
- 06 문화가 산책 '숲'에서 약상을 길어 올린
클래식 작곡가들
- 07 古典名句 사속이의斯速已矣,
하대내년何待來年?
- 08 위원단상 건강한 여름을 위한 전라북도 보양식 열전
- 09 신 동의보감 복식호흡腹式呼吸
- 10 상담노트 위로를 부탁해
- 11 조정후기 숨은 맛집 찾기
- 12 특별기고 '언론'과 '언론 아닌 것' 사이
- 13 위원회 뉴스·위원동정
- 14 조정중재사례
-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8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3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글 쓰는 전문 직업인 조선의 사관

— 사관의 어원·역할 —

1. 잔칫집에도 가고, 상가에도 갔던 사관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청은 궁궐의 밖에 있었다. 그러나 왕실의 업무와 연관되는 중요한 관청은 궁궐 안에 두었다. 춘추관의 경우, 임금의 모든 언행을 기록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안에 있었다. 현재 전해지는 궁궐 내 각 관청의 배치도를 보면, 예문관과 승정원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춘추관의 임무와 역할이 군주를 비롯한 모든 관료들의 행동거지를 적어야 했던 만큼 궁궐의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소속 관원들의 품계가 비록 7품 이하의 말단이었지만, 수행했던 일은 다른 어떤 부서에 비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연과 정치가 논의되는 모든 곳, 즉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여 사실을 기록하는 기본적인 임무 외에, 왕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세징수의 잘잘못을 파악하고, 이의 시정책과 문제점을 살펴 조사하였다. 승정원의 주서와 함께 동·서빙고에 가서 얼음 저장 여부와 부정 여부를 살피기

도 하였다. 옥에 구속된 죄수를 조사하기도 하였고, 죄인의 심문 시 동참하기도 하였다. 대신이 사직서를 올릴 경우, 왕을 대신하여 사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달시키기도 하였으며, 군주를 대신하여 고위 관료의 문병 혹은 상가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성균관 및 4학에 가서 유생의 출석부를 가져다가 수업 여부를 헤아리기도 하였다. 범죄 사건의 처리 상황 검열과 종묘에 짐승을 올리는 제사의 주재, 빈민구휼소에 가서 구휼 행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 조사와 의정부 찬성의 임명 시 후보자를 삼정승에게 물어오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관은 사초와 시정기의 작성, 그리고 실록의 편찬 등과 관련된 역사 편찬 활동 이외에, 군주를 대신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였다. 왕의 최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수행하였던 임무가 군주의 통치 행위 및 유교 정치 이념의 구현 여부를 확인하는 일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던 일이었다. 더욱이 공론의 형성에 기여하였던 점에서 볼 때, 언론정치의 전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2. 서울과 지방에서 활동한 사관들

예문관에 소속되었던 8명의 전임 사관만으로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실을 기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에 상당수의 겸직 사관을 두어 광범한 기록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태조 4년 1월 “(정도전에게) 정승의 자리에 앉히고, 또 국사를 편찬하는 관직까지 겸하게 하였더니,” “(정충에게) 국정을 결정하는 의정부에 올리고 사필을 잡는 관원을 겸하게 하였더니”라는 기사는 역사 사실의 기록을 위하여 전임 사관 외에, 겸임 사관(겸춘추)을 광범하게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왕조의 관직에는 동일한 명칭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춘추관을 비롯하여 경연, 홍문관, 예문관, 관상감의 최고직은 모두 영사



〈이담명 사초〉



〈광해군일기-태백산본〉

로 동일하며, 지사와 동지사는 경연과 성균관의 관직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들 관직은 모두 겸직이었다. 따라서 중앙 정치의 최고 핵심 관직인 영사, 감사, 지사, 동지사, 대제학, 제학, 세자사, 세자이사, 세자부, 세자빈객 등 2품 이상의 36자리는 의정부의 삼정승(3명)과 찬성(2명), 참찬(2명), 육조의 판서(6명)와 참찬(6명) 등 19명이 겸임하였다.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수 인사들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던 겸직제는, 행정 업무의 유기적인 연관성과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활용, 국가의 예산 절감 효과 등의 목적이 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광범한 겸직제의 운영은 정국의 흐름뿐만 아니라, 권력의 향배와도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었다. 영사부터 수찬관까지 춘추관의 당상관도 19명의 인사들이 겸임하였다. 이는 춘추관이 정치권력의 동향과 민감했음을 반영한다. 조선중기 이후 춘추관의 당상관들이 정치권력과 연계되어 실록의 편찬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사례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편수관 이하 기사관까지 실무 인사들은 중앙 행정 관서에 소속된 관리들이 겸임하였다. 의정부, 육조, 홍문관, 승정원, 승문원, 사헌부, 사간원, 예문관, 시강원, 종부시 등 중앙의 핵심 기관에 소속된 인사들에게 겸임시킨 것은 소속 관청의 시행사를 광범하게 수집하여 시정기로 편찬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춘추관은 역사 편찬 기관, 학술 기관 및 정치 기관으로서의 성향을 두루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은 물론, 지방에도 사관의 임무를 수행했던 겸임사관을 두었다. 이를 외사(外史)라고 한다. 즉 외사란 지방 행정 단위에서 사관의 임무를 겸하면서, 지방에서 발생한 갖가지의 사실과 수령들의 시비득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던 관료를 말한다.

고려왕조에서도 현종 9년(1018) 지방 제도가 정비되면서, 3경과 4도호부 8목에 사록(司錄)을 배치하였다. 이들로 하여금 수령을 보좌하게 하고, 속읍을 순찰하며 향리 감독 등의 임무와 지방 사실의 정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종 10년(1515) 6월 삼정승을 비롯한 대신들이, '선대에 없던 일이지는 하지만 도로나 수령 중에 적당한 자에게 사관직을 겸임시켜 선악을 기록하게 한다면, 수령들이 공론을 두려워하여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체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외사는 단순히 지방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관직이 아니다.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령의 탐학을 견제하고, 각 지방의 역사와 문화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겠다는 지배층의 의지가 집약되어 나타난 역사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령들의 지방 행정 운영에 대한 견제 역할, 즉 지방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언론활동의 하나였던 것이다.



〈오대산사고-북원 전〉



〈오대산사고-현재 모습〉

3. 사관 활동의 의미

일반적으로 역사의식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당대 문제를 역사적 과제로 의식하고자 하는 현재적 인식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에서 중앙과 지방에 사관을 설치·운영한 것은, 그들이 작성한 문서가 곧 당대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즉 역사의식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즉 조선시대 사관의 설치와 운영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던 지배층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사의식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각 지방의 시·군·읍·면에는 그 지방의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안에 '문화계'라는 자리가 있고, 또 문화원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은 자리 이동 없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외사와 동일하게 비교될 수는 없지만, 자기 지방의 문화와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통된다고 본다.

"군주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관뿐이다(君主所畏 史而已)."라는 연산군의 고백을 보면, 사관의 기사 활동은 다른 어떤 기관의 언론활동 이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숲’에서 악상을 길어 올린 클래식 작곡가들

더운 여름날에 나무들이 얹혀 만든 숲의 그늘은 피부로 다가온다. 서늘하게. 그래서 숲은 촉각의 공간이다. 숲은 나무들이 모여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란 사전적 의미로만 단정될 수 없는 감성적 공간이다. 그곳은 도피와 은둔의 공간이며, 고독과 사색의 공간이자, 휴식과 충전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뇌리에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클래식의 역사를 뒤져보아도 숲은 작곡가들의 산책로가 숨어 있는 공간이자 영감과 소재를 안겨주는 곳이기도 했다. 산책을 즐겼던 베토벤(1770~1827)이 많은 작품 구상을 나무로 우거진 산책로에서 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전원(田園)’이라는 부제가 붙은 교향곡 6번은 난청이었던 그가 자연을 청각 외의 다른 감각들로 음미하기를 즐겼으리라는 추측을 해보게 하는 교향곡이다.

▶ 낭만의 숲

독일 가곡의 전통을 보면 베토벤부터 자연의 소재가 노래 속에 꽃피우기 시작했다. 자연물에 대한 감정이입은 베토벤 이후 슈베르트(1797~1828)로, 슈만(1810~1856)과 브람스(1833~1897)로 이어졌다.

영화 ‘파리넬리’(1994)의 감독으로 유명한 제라르 코르비오(1941~)의 또 다른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1987)에서 노 스승과 소프라노 제자가 마차를 타고 숲을 거닐다 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노 스승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던 여 제자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비를 그대로 맞으며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진다. 그 장면에 흐르던 구스타프 말러(1860~1911)의 교향곡 4번 중 3악장은 비에 젖은 푸른 숲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에는 ‘비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곡을 들을 적에도 사랑과 숲과 비가 한데 섞여 있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마치 브람스가 비에 젖은 숲을 보며 감상하라고 작곡한 곡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저녁 무렵에 제자는 노 스승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노 스승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던 그녀는 비에 젖은 숲으로 뛰어 들어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나왔을까. 노 스승은 창가에서 슈만의 가곡 ‘리더크라이스

(Liederkreis)’ 중 다섯 번째 곡인 ‘달밤’을 부른다. 곡이 그리는 달밤은 가수가 지닌 낭만적인 감성만으로는 그려내기 힘든, 상당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곡이다. 이 가사에도 숲이 나온다. “마치 하늘이 조용히 대지에 입맞춤하는 듯한 밤, 바람은 불어 풀은 물결치고, 숲은 은밀히 속삭인다.” 노래를 들으며 창밖에서 노 스승을 바라보던 여 제자의 뺨은 젖어 있던 빗물과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한데 섞여 있다.

▶ 공포의 숲

1977년부터 1989년까지 무더운 여름밤에 오싷한 냉기를 불어넣었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시간적 무대는 ‘밤’이고, 장소는 대부분 숲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종반부에는 늘 “이 이야기는 ○○도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로…”라는 식으로 끝났던 드라마.

숲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려움의 시공간이었다. 우리에게 동화로 알려진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야코프 그림(1785~1863)과 빌헬름 그림(1786~1859) 형제가 15세기부터 독일 각지에 퍼진 영아 살해 관련 민담을 모티프로 하여 지은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배경 역시 숲이다. 버려진 아이들과 그들을 향해 식욕을 불태우는 마녀는 미로 같은 숲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 형제의 잔혹동화는 작곡가들에게 인기의 소재였다. 독일의 작곡가 옌겔베르트 뉘퍼딩크(1854~1921)는 ‘헨젤과 그레텔’을 토대로 같은 제목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앞서 말한 말러는 그림 형제의 민화집에 수록된 ‘노래하는 뼈’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탄식의 노래’를 작곡했다. 이 이야기 역시 숲을 배경으로 한 비극적 동화다. 이야기에는 신비의 숲속에 피는 붉은 꽃을 찾아오는 사람과 혼례를 하겠다고 선언한 여왕, 붉은 꽃을 찾아 나선 형제, 아우가 꽃을 찾아내자 그를 죽여 버드나무 밑에 묻고 꽃을 강탈한 형, 아우의 뼈를 우연히 발견해 그것으로 살인의 전모를 노래하는 음유시인이 등장한다. 결국 혼례식에 참석한 음유시인이 여왕과 형 앞에서 플루트를 불어 살인의 전모가 밝혀지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말러는 빈 음악원에 수학하던 17세 때 이 곡을 작곡했는데, 그는 숲을 살인과 공포의 기운이 가득 곳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사속이의 斯速已矣, 하대내년 何待來年?

▶ 신비와 신성의 숲

숲은 신비의 공간이기도 하다.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베르디(1813~1901)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취해 작곡한 오페라 '맥베드'는 초입에 마녀가 등장하는 숲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하나의 교향곡은 곧 하나의 세계”라고 말한 말러. 그가 작곡한 교향곡 3번의 도입부에서 모든 악기는 제각각 소리를 내며 숲과 대지의 울음을 묘사한다. 그리고 3악장에서 숲의 짐승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오케스트라가 묘사하는데, 이는 숲의 정령들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동양사상은 숲속의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물신관을 기본으로 한다. 어린이만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 치부할 수 없는 미야자키 하야오(1941~)의 작품들 중에 ‘모노노케 히메’(1997) 역시 만화의 형식을 빌려 이러한 철학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작곡가 히사이시 조(1950~)의 음악으로 그 숲을 더 신비롭게 영상화한다.

▶ 악기와 음악을 선물한 숲

생각해보면 서양의 현악기와 목관악기들 모두 모두 숲에서 나온다. 영화 ‘레드 바이올린’(1998)이 특정 인물보다는 바이올린의 여정을 통해 음악과 인간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처럼, 숲과 그 속의 나무는 죽어서 인간에게 악기와 음악을 선물한다. 숲과 나무가 없다면 인간에게 음악도 울림도 없는 것이다.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지가 되었던 숲은 현대인들에게는 휴식의 쉼터가 된다. 여름이 가기 전에 숲속에 가보자. 조용한 그곳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용히 걸어보면 아마 오션지에 그릴 수는 없다고 해도 자신만의 악상이 떠오를 것이다. 그곳은 낭만과 신비, 혹은 공포가 가득한 신비한 초록색 시공간이기에.

사람은 늘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 예컨대 스포츠에서 상대방의 작전을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상대도 자신의 작전을 감추고 나의 작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적시에 작전을 걸면 성공하겠지만 조금 일찍 또는 늦게 승부수를 던졌다가 실패하곤 한다. 이처럼 적시의 선택은 잘 하기도 어렵지만 선택한 대로 진행하기도 어렵다. 마음이 서더라도 승패를 알 수 없으니 주저하기 마련이다.

맹자는 세금을 낮추고 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래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나라 대부 대영지(戴盈之)는 맹자의 제안이 타당해보이지만 기존의 정책을 당장 폐지하려니 ‘정책의 충격’을 완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대영지는 먼저 세액을 줄이고 1년의 경과 기간을 그친 뒤에 맹자의 제안을 실현하려고 했다.

맹자는 대영지의 의견을 듣고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의 닭을 매일 한 마리씩 훔쳤다. 어떤 사람이 도둑에게 “도둑질은 군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충고를 했다. 도둑은 충고를 듣고서 다음처럼 말했다. “훔치는 숫자를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 훔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닭 훔치기를 그만두겠습니다.” 참으로 도둑의 발상은 귀엽기까지 하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만약 자신의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어야지 무엇 때문에 내년을 기다려야 할까요?”(여지기비의如知其非義, 사속이의斯速已矣, 하대내년何待來年?)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서도 결행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하다가 시간을 놓치곤 한다. 맹자는 미루고자 하는 마음을 과감하게 싹둑 잘라서 당장 결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한 여름을 위한 전라북도 보양식 열전



〈남원 바래봉에서 오른쪽 끝이 필자〉

예로부터 돈을 벌면 충청도 사람들은 옷을 사 입고, 경상도는 집을 고치며, 전라도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해먹는다고 할 정도로 전라도는 식도락의 본향이라 할 만하다. 복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요즘, 맛과 멋의 전주에서 전북 중재부 위원들과 같이 맛본 여름 보양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여름,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보양식을 찾아 삼복더위에 맞서보면 어떨까.

● 고창 풍천장어

7월 초의 어느 주말, 위원들과 같이 고창 선운산 산행을 마치고 들른 풍천장어 식당의 장어는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장어의 진미는 가을에 더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주인이 서비스로 제공한 복분자주와 함께 먹는 여름 장어 소금구이도 감칠맛이 그야말로 짱이었다.

주인에 따르면 장어는 비타민 A, B, E 및 천연 토코페롤이 풍부해서 정력뿐만 아니라 시력에도 좋아 남녀노소 모두의 사철 건강식으로 좋으며 또한 암세포를 이기는 힘을 준다고 한다. 파란 껍질이 아니라 폭 익은 노란 껍질에 싸먹으니 향이 잘 어우러져 더욱 맛있으면서도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복분자주를 선운산 근처에서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별로 없다고 한다.



● 남원 흑돼지 허브 삼겹살

매년 오월마다 철쭉으로 붉게 물들어 천상화원을 이룬다는 남원 바래봉. 지난 5월 위원들과 바래봉을 올라 본 철쭉도 좋았지만 내려와서 먹은 운봉읍의 흑돼지 삼겹살 역시 일품이었다. 일반 돼지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 일반 농가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토종 흑돼지. 하지만 일반 돼지에서 맛볼 수 없는 육질의 쫄득한 고소함과 바삭함이 가히 최고였다. 생고기 삼겹살에 허브를 뿌려서 신선함과 허브향은 덤.



● 전주 민어탕

‘복더위에 민어탕이 일품(一品), 도미탕이 이품(二品), 보신탕은 삼품(三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어는 여름이 제격이다. 민어는 여름에 산란을 하려고 살이 오를 대로 오르기 때문이다. 민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해서 특히 삼복더위에 지친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한다. 전북 고유의 보양식은 아니지만 심리 끝나고 들르게 되는 민어탕집이 유명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늦게까지 당사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간신히 합의시킨 후 위원, 직원들과 기운 보충하러 자주 가는 식당. 외진 위치와 허름한 간판, 좁은 식당 내부와 부실한 냉난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힐링 푸드 민어탕이 기다리기 때문. 얼큰 시원한 국물과 함께 찹지고도 단단한 생선살을 먹다보면 이마에 땀이 맺히면서 어느새 뚝배기는 바닥을 드러낸다. 한옥마을에서 가까우니 타 지역 계신 분들은 전주 오시면 꼭 한번 드시길.



신 동의보감

김태균
한의사



복식호흡 腹式呼吸

몸통은 앞쪽의 배와 뒤쪽의 허리로 나눌 수가 있다. 요통이 왔을 때 대개 허리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몸통의 앞부분에 속하는 배 부위를 강화시키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배에는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개의 막(膜)과 근육들이 있다. 횡격막과 복직근, 복횡근, 복사근, 골반저근육, 흉요근막 등등이다. 이 근육과 막들은 마치 코르셋처럼 배안의 여러 구조물과 장기들을 감싸고 있어서 '내부 코르셋(internal corset)'이라고도 별명이 있다. 코르셋을 몸에 감아서 허리를 편안하게 하듯이, 이들 내부 코르셋 근육들이 허리를 편안하게 지탱을 해주게 된다.

이 내부 코르셋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다. 그것은 '복식호흡'이다.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 마실 때 최대한 배를 내밀고 숨을 들어 마시고, 또 숨을 내쉴 때에는 최대한 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내쉬는 방법이다. 어디서나 복식호흡은 할 수 있다. 숨을 쉴 때 배를 충분히 앞뒤로 내었다 넣었다 하는 것이다. 서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복식호흡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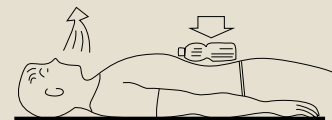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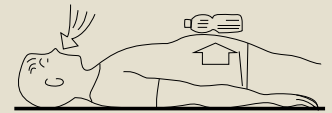
이 복식호흡은 성악을 할 때에도 응용이 되는 방법이다. 노래를 부를 때에 최대한 숨을 많이 들어 마실 수록 넉넉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턱과 가슴근육을 최대한 이완시키고 배를 내밀어서 최대한 숨을 들어 마신 뒤 배꼽에 힘을 주게 되면, 마치 축구공에 바람을 꽉 넣은 것처럼 공기가 가득하게 되고 탄력이 생기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허리가 강화된다.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뱉는 동작을 통해서 내부 코르셋 근육들이 이완이 되고 스트레칭이 되며 허리와 척추의 굳어진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된다.

마치 길다란 풍선을 바람을 넣은 뒤 가운데 부위를 손으로 짚어 버리면 양쪽 끝의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난 뒤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배안의 복압(腹壓)으로 인해 오장육부와 여러 기관들과 근육들이 강화가 되며 폐활량이 좋아지며 몸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된다.

평소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목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목만 쉬고 몸은 오히려 힘이 빠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생기게 되지만, 복식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발성이 좋아지고 성량이 풍부해지며 내부 코르셋의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건강이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복식호흡을 하게 되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복식호흡을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복식호흡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압과 면역력을 좋게 하며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서를 안정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다. 한의학에서도 배꼽아래 3촌(寸)부위에 관원(關元)혈이라는 단전이 있으며 단전호흡을 통하여 우주의 원기(元氣)를 단전으로 모을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한다. 평소 체력이 약한 분들은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복식호흡을 실천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누워서 하는 복식호흡 방법〉



위로를 부탁해

“선생님, 그게 아니구요, 제 말씀 좀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15분째 전화를 받고 있는 상담팀 직원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벌개진다. 말투는 더없이 공손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올 것이 왔구나” 싶다. 옆에서 듣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상담팀 직원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경험하는, 한번 겪고 나면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이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악성 민원의 유형은 일방통행형이다. 이런 유형의 민원인은 절대 상담직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지시한다. “당장 생방송 중인 보도를 중단해주세요”, “수요일까지 나와 관련한 기사를 모두 삭제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 재삼재사,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소개하고 양해를 구하면 이제는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직원이나 기관을 폄하하기 시작한다. “그런 것도 못하면서 국민 세금만 축내고 뭐하는 겁니까?” 아마도 속이 상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듣는 사람으로서 힘이 쭉쭉 빠지게 만드는 말이다. 세금을 축내다니...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것만큼 모욕적인 말이 또 있을까.

무작정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인도 빼놓을 수 없는 악성민원의 유형이다. 누군가에게 잔뜩 화가 나 있으되 표출할 곳이 없어 만만한 공공기관의 민원 부서를 찾는 분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다. 법적인 절차나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안내는 이분들에게 관심 밖이다. 그저 자신의 분노감을 정확히 되지 않은 언어로 표현하고 여과 없이 감정을 표출할 뿐이다. 이런 유형의 상담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선불리 말을 건넸다가는 그마저도 분노의 빌미가 될 테니, 그저 어서 빨리 화를 누그러뜨리기를 바라며 참을 수밖에...

상담팀 직원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악성민원은 이른바 “답정너”형이

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저 대답만 하라는 의미로, 본인이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놓고 맞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형이다.

“그러니까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명을 공개해서 보도해도 문제 없는 거죠?”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사람도, 뻔히 원하는 대답을 알면서도 해줄 수 없는 사람도, 모두에게 참 힘들고 애달픈 상담이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힘든 민원은 내적 질서에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정신이상으로 불리우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고민은 정말이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범 우주적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국가에서 방송을 통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외계인이 나를 미행하고 있다” 등등이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일회성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때로는 그동안 참 힘드셨겠다고 진지하게 위로를 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동지애를 강조하기도 하면서, 대체 다음에 찾아오시면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할지 곤궁해진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데, 즐기기까지는 어렵다 해도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여전히 전화기 저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은 상담팀 직원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민원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그럼으로써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그 마음이 비록 약간 일그러진 형태로 표현된 것 뿐, 내가 미워서, 나를 상처 입히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또 우리의 상담으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고 감사하는 다른 많은 민원인들에게 위로받으며, 오늘도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위로를 건넨다.



숨은 맛집 찾기

— 단골손님 등이 인지함으로 인해 ‘맛집’이 특정됐다고 보아
손해배상 지급키로



소위 ‘맛집’에 관한 방송을 보다보면 자연스레 스마트폰에 손이 간다. 해당 식당의 상호와 위치를 찾기 위해서다. 주요 레시피를 ‘머느리도 안 알려 준다’는 식상한 사장님의 멘트와 끝내주게 맛있다는 손님들의 과장된 제스처가 대부분인 방송 그 자체만으로는 도무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문 블로거와 ‘단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의 수고로도 비교적 쉽게 관련 정보를 찾곤 한다.

최근 신선한 생고기를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일부 정육식당에서 용량·등급·부위 등을 허위로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 예고편에 관한 조정사건이 있었다. 신청인은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성실한 영업을 통해 맛집으로 평판이 높았으나 이 예고편으로 순식간에 불량 식당으로 낙인찍히고 하루 평균 약 1천만 원이던 매출액이 급감했음을 주장하였다.

해당 예고편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취지가 쉽게 와 닿지 않았다. 신청인은 본인의 식당 내부 전경이 노출되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인데 몇 차례 반복하여 확인하였으나 해당 장면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결국 이를 캡처한 사진을 보니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 10여 개 테이블에 소고기와 불판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식당과 다를 바 없었기에 신청인 식당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이었다.

예측대로 해당 방송사는 별다른 특색 없는 일반적인 식당 내부 전경을 모자이크 처리해 예고편에서 1초 미만의 순간으로 방송하였기에 신청인에 대한 특징이 어려움을 주장하였다. 다만 신청인 식당이 본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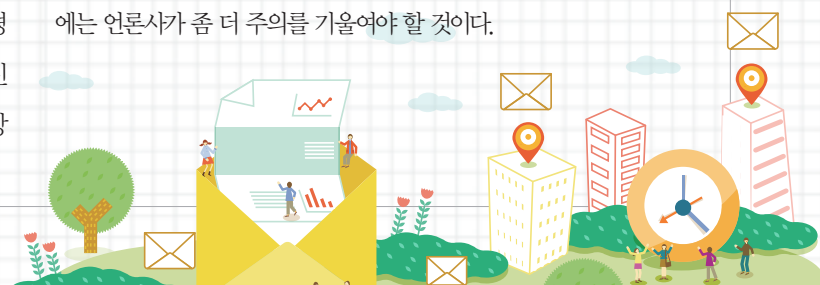
송 내용과 무관함을 인정하기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였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맛집으로 유명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간 방문 경험자가 많았고, 특히 예고편을 본 일부 단골손님들이 먼저 신청인에게 방송 사실을 알려 왔으며, 포털사이트의 수많은 먹거리 관련 게시판·블로그에 캡처한 해당 장면이 게시되고 신청인 식당 상호와 위치가 댓글 등으로 공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재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선의(善意)로 간주하고 방송사의 단순 과실이긴 하나 신청인이 특정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유도하였고, 손해배상액 지급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특정에 대한 우리 법원의 위와 같은 일관된 태도와 아울러,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처럼 맛집과 같이 대중적 관심이 크고 해당 장소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특히, 단골손님)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과 ‘언론 아닌 것’ 사이

— ‘언론’에 대한 새로운 법적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살다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안과병원이면 눈이 아프기만 하면 알아서 다 치료해 주겠거니 하고 찾아갔더니 그런 병은 우리 병원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며 더 큰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다. 가입할 때는 온갖 사고를 다 책임져줄 것처럼 말하다 막상 사고가 나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이러저러한 약관을 들이대며 해당사고는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때도 그렇다.

‘의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기대에 대한 배반은 분노를 낳는다. 특히 그 당사자가 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거절의 이유가 아무리 합당해 보이나 하더라도 노여움은 쉽게 풀리지 않는 법이다.

다소 무리한 비유일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일어난다.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에는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이지만 하면 뭐든지 다 구제해 줄 것으로 알고 찾아갔더니 저지기는 ‘언론’이 맞는데 저지기는 ‘언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럴라치면 민원인은 “헐! 도대체 뭐가 언론이고 뭐는 언론이 아니란 말이요? 뭘 기준으로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는 거요?”하고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상담직원은 언론중재법을 비롯하여 동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들을 들이대며 더 큰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민원인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민원인 : “뭘 그딴 건 난 모르겠고! 이거 빨리 접수나 해주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실리면 되고 저기 올라있는 건 안 된다니 뭘 그딴 법이 다 있단 말이요!”

상황이 이쯤 진행되면 상담직원도 할 말이 별로 없다. “법이 그래서 그래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이긴 하지만 상담직원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 ‘언론’은 신문법상의 신문, 인터넷신문,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그리고 방송법상의 방송, 그 밖에 잡지와 뉴스통신, IPTV를 말한다. 그 밖의 매체는 속된 말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와있는 내용은 적어도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은 아니다. ‘언론’의 지위를 얻지 못한 이런 유사언론 표현들은 ‘정보’로 분류된다. 표현행위라는 동복(同腹)에서 나왔지만 입양된 매체에 따라 언론중재위의 관할을 받지 못할 운명을 타고난 것들이다. 죄송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다른 병원으로 가보셔야 한다.

그런데 민원인의 지적도 맞는 말이다. ‘뭘 그딴 법이 다 있단 말인가.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언론인지 아닌지 내가 어찌 안단 말인가. 하는 짓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르다면 덩치가 좀 작다

거나 유독 쫓아다니는 광팬들이 따로 좀 있다거나 ...’

사실 언론중재법이 제·개정될 당시만 해도 이런 종류의 매체들은 별로 없기도 했지만 설사 있다 해도 공론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편이었다. 그렇기에 굳이 이들까지 규율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언론중재법 시행령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킨 것도 2009년 법령개정 당시의 미디어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생태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통저널리즘에서는 직업적인 기자의 ‘뉴스가치’ 판단에 대한 소속 뉴스조직의 게이트키퍼 여부가 ‘언론’과 ‘언론 아닌 것’ 간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 블로그나 기자 개인블로그, 뉴스펀딩 등에서 보았듯이 뉴스조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한 뉴스의 영향력이나 권위는 때때로 기성언론을 능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타 언론의 뉴스를 자기 플랫폼 이용자들의 선호에 맞추어 선별, 부분가공·편집하여 제공하는 ‘뉴스크레이션서비스’와 같은 신생뉴스 스타트업들도 쏟아지고 있다. 1인 미디어형태의 인터넷방송이나 시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팟캐스트’는 또 어떠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체개념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뉴스플랫폼들의 출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매체였던 SNS가 유력한 뉴스유통창구로 등장해 최근에는 모바일포털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하여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한, 오보로 인한 피해나 인격권 침해도 덩달아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환경에서는 민원인 이전에 위원회 상담직원도 민원인이 문제삼는 매체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중재제도가 디지털 생태계 내 뉴스플랫폼의 현란한 진화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이나 제도가 현실을 모두 예측하고 앞질러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디지털의 속성에서 비롯하는 다양한 ‘신생’ 내지 ‘변종’ 뉴스플랫폼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언론중재제도의 미래에 던져진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에 대한 법적 개념 재정립을 위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때이다.

위원회 뉴스
—
NEWS

몽골 · 러시아 언론평의회 등 시찰



위원회 시찰단이 러시아 언론평의회를 방문해 평의회위원들과 간담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2015년 7월 5일부터 12일까지 몽골과 러시아의 언론평의회와 러시아 최대 민간 미디어그룹인 'National Media Group'을 방문해 현지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접하고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알렸다. 방문단은 김수일 중재부장(서울 제8중재부, 사진 우측 세 번째), 어경택 중재위원(서울 제5중재부, 우측 두 번째), 이영덕 중재위원(서울 제7중재부, 우측 다섯 번째)으로 구성됐으며, 이재범 기획팀 차장, 김성찬 조사관이 수행자로 동행했다.

몽골 언론평의회는 언론의 자유 신장과 책임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1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위원회 시찰단은 Tamir Ukhnaa 부회장 외 이사 1명과 면담하면서 조직 구성과 언론보도 관련 불만 처리 현황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러시아 언론평의회에서는 Mikhail Fedotov 회장 외 8명의 위원들이 시찰단을 맞이했으며, 위원회 시찰단과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와 평의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의 차이점 등을 논의했다. 또 위원회 시찰단은 러시아 최대 민간 미디어그룹인 'National Media Group'을 방문해 Larisa Prigorodova 부사장 외 이사 2명과 접견하면서 한국의 고충처리인 제도를 설명하고 미디어 그룹 소유 언론사가 마련한 피해구제나 불만처리를 위한 방편 등에 대해 간담을 가졌다.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위촉

위원회 사무처의 권오근 심리본부장이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무처 인사(7월 27일자)

- △ 미 듀크대 샌포드 공공정책대학원 미디어센터(파견) 여종국
- △ 총무팀장 최영훈

위원동정
—
COMMISSIONERS

2015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사회



강태훈 부장(서울제2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7월 3~4일 이틀간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서울남부지법 주최로 열린 '2015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 사회를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적 심리방안'을 대주제로 '심급구조 재설계를 위한 적절한 심리모델 개발'과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증거조사절차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로 임명



박성희 위원(서울제8중재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은 7월 15일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로 임명됐다. 영상자료원의 비상임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문화예술계로부터 추천받아 영상자료원장이 제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신설



위원회는 대학 언론사 기자 및 언론인 지망 대학생의 언론자유 및 인격권 보호 의식과 기사작성방법 등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대학생 연수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지역에서 대학생 연수를 진행했는데, 7월 한달 동안 60여 명의 대학 언론사 기자들이 연수에 참여했다. 학생기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실제 취재현장 및 기사작성과 관련한 생생한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으며,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 분쟁사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위원회의 대학생 연수 과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과 언론중재위원회', '선배 언론인이 알려주는 취재현장과 기사작성법' 등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보도물의 삭제 요청으로 손해배상금액 조정

A방송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서울시장의 시정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장에게 항의하는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이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악성댓글이 달리고 다른 인터넷 게시판으로 전파되는 등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3백만 원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 주제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신청인의 목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보도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보도 가치상 신청인의 초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보도물로 인하여 확대된 신청인의 고통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삭제 요청하면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대상기사로 인한 신청인에 관한 부정적 내용의 댓글 게시판 삭제 조정

C신문은 국내 프로축구 모 구단의 팬클럽인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이 실점하여 패색이 짙어지자 경기를 관전하는 동안 상대팀 선수들 및 심판진에게 욕설을 했고, 신청인 단체 회원들의 욕설은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회원들이 경기를 관전하면서 욕설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고, 국내 프로축구 응원문화 발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도 조정대상기사가 전제된 포털 사이트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다수 작성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측 기자들 비롯한 프로축구연맹 관계자가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정대상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 단체의 반론이 미흡하게 반영된 점을 인정하여 신청인 단체의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포털사이트에 댓글 게시판의 삭제를 요청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했다.

명백한 취재 거부 의사에도 몰래 촬영해 방송, 손해배상금 3백만원으로 조정성립

B방송은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주변인물을 인터뷰해 방송하면서 피의자의 이웃이었던 신청인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부 전경은 그대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취재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며 방송 촬영하는 것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전경이 그대로 방영되어 지인들로부터 살인 사건과 관련한 충격적인 질문까지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전경을 그대로 방송해 신청인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해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신청인들 중 한 명이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는 점을 취재진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 몰래 촬영해 방송했다는 점을 지적한 후,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을 중단하고 신청인들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했다.

일방적 제보에 따른 경찰관의 명예훼손 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로 합의

D신문은 경찰관이 불법유치권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법유치권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한 후 해당 사건을 각 기소의견 및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을 기소의견 및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쟁점에 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경찰관이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는 사항과 관련,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이 게재되어 있으나 선정적인 제목 및 신청인의 비리를 확산하는 듯한 문구 등으로 인해 독자들이 신청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기사를 읽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신청인의 반론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했으며, D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서민영-**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서로 분쟁이 있게 마련인데 실타래처럼 잘 풀어 나가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한 현재를 살아가다보면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 관심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도 제공하고 있다니 유익한 정보네요. 아참! 요즘 청소년들의 카톡 및 인터넷에 생각없이 올린 글들로 인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를 위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냐요? 언젠가 방송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긴 한 것 같아요. 조정후기의 '저는 억울합니다'의 기사도 유익했습니다. 실전을 바탕으로 써주신 것이라 이 기사를 읽고 참고하시는 독자들도 많겠어요. 읽으면서 법 용어도 알게 되고 어쩐지 뿌듯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번 호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

구민정-

잠시의 여유동안 「언론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기사가 재미있어서 끝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7월호에 연재된 <역사 속 언론> '글쓰는 전문직업인 조선의 사관'이 흥미로웠습니다. 옛날에 사관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와 오늘날의 언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를 알게 되고, 실제 조정과정을 간략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www.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갈등해결방법을 배우며 관련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02

언론분쟁 사례 소개

03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04

모의조정 실습

05

위원회 심리실,
언론사 등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 기간 : 연중운영
- 시간 : 3시간
- 장소 : 위원회 강의실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www.pac.or.kr
- 문의 : 교육운영팀 (02-397-3092~5)

※ 프로그램 내용은 선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